



- ▶ COVER STORY:
A.T.A Carnet..... 1
- ▶ FTA News: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2
- ▶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주의와 양자주의②...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⑨..... 4
- ▶ WHERE IS GRACE CHANG?:
어른으로 산다는 것 6
- ▶ ABOUT WRITERS..... 6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ATA Carnet'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A.T.A. Carnet

2010 년 Vancouver Olympic 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눈물과 벅찬 감동을 안겨 주었다. Vancouver 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선수들이 보여줬던 열정은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2010 년 개체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할 G20 정상회의가 2010 년 11 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인 아시아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2010 년 11 월 개체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인들의 축제인 남아공 월드컵이 같은 해에 개최됨으로써 2010 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 선수단, 취재단 등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이러한 국제 행사에 해당 국가로 반입되는 직업용 물품이나 전시용품 등의 수는 다양하고 많을 것이며, 통관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들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가 있다.

'ATA Carnet'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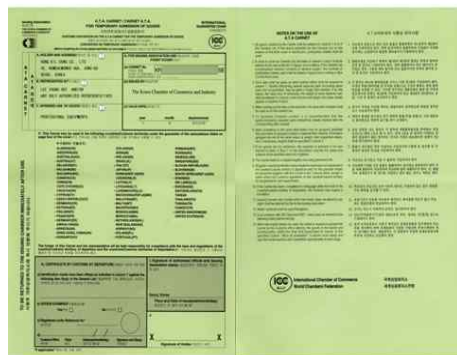
<ATA Carnet 을 이용한 통관 절차>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복잡한 절차 등이 생략되게 된다.

또한 ATA 협약가입국간에는 상호이용이 가능하여 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가 있다. ATA Carnet 는 상품견본 (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 (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 (Fairs/Exhibitions)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일시적으로 수입/수출되는 물품의 통관에 주로 이용된다.

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를 발급하고

ATA 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 수입 또는 보세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수 있는자(보증단체)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단체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되어 있다.



<ATA Carnet 양식>



<ATA Carnet 서류 발급 절차>

A.T.A. Carnet 발급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되어 진다. 하나, 해당 서류를 통한 수출입통관 업무는 관할지세관에서 행해져야 하며 특수한 통관형태이다 보니, 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자에게는 다소 난해하며 오히려 일반 통관절차에 비해 복잡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관세사'의 조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 상담을 통해, Carnet 에 관한 업무절차 및 관련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순 형

(shyoon@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2010 년 3 월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인도와 FTA 를 체결·발효하고 있으며, 미국, EU 와는 향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의 FTA 추진에 따라 체결기간 수출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FTA 원산지 기준과 판정의 다양·복잡성은 기업체 FTA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부품으로 제조된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 기계를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 및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체에서 FTA 표준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효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물품별로 자재번호 및 HS CODE, 품명, 단가, 소요량, 원산지, 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체의 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 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서류보관 등이 일괄적으로 처리·관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체는 취급하는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어 완제품의 원산지가 자동적으로 판정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재료, 중간재, 수출물품 정보 및 단가정보가 관리되어 FTA 체결국별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정부의 FTA 추진에 따라 체결국간 수출입

| 구분 | 한-칠레 | 한-인도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 |
|---------|------------|------------|------------|------------|------------|-------------------|
| 부가가치 공식 | 공제법 직접법 | 공제법 | 공제법 | MC 법 | 공제법 직접법 |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
| 부가가치 수준 | 45% 30% | 25%~45% | 45%~55% | 40~70% | 40% | 55% 35% 35% |
| 제품기준 가격 | 조정가격 (FOB) | 조정가격 (FOB) | 조정가격 (FOB) | 조정가격 (EXW) | 조정가격 (FOB) | 조정가격(FOB) 순비용 |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 적용이 복잡하여, 기업체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원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FTA 특례법령에서 새로이 도입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1) 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현재 한국과 FTA 를 체결·발효한 국가는 16 개국이며, 향후 미국, EU 와 FTA 가 발효되면 총 44 개국이 된다. FTA 발효국가와의 수출입 무역비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나 원산지 규정이 각 FTA 별로 상이하여 기업체는 FTA 원산지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게 된다.

2) 수출입업체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 필요증대

현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해외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EU 와의 FTA 발효되면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세관의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원산지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신뢰하지 않는 편으로 수출업체는 원산지의 확인·관리·보관 및 검증대비까지 가능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위한 요건 구비

2010 년 3 월 2 일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에서는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 하였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별로 업체가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법령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체의 원산지증명 능력에 대한 요건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비로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는 해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국내 자체 개발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의 대응에만 그치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함은 물론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효과적인 만큼 기업체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② 지역주의와 양자주의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수출지향적으로 자리잡은 70년대부터 항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손꼽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약 33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들 각국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유럽 등의 지역과는 달리 다수의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지역 역내 및 역외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9세기 초 중남미 지역의 독립이래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까지 중남미의 경제체제에 영향을 끼친 경제이론은 자유 시장 원리 즉 작은 정부의 지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내실 있는 성장 없이 외국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원자재의 수출이 감소하여 외화의 부족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흐름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ISI 정책은 아르헨티나 경제학자인 라울 프레비쉬(Raul Prebisch)의 “중심부와 주변부 이론” - 후에 종속이론의 모태가 됨 - 의 권고에 따라 개발전략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1973-4 1차 오일쇼크를 맞이하여 통화긴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 동아시아와는 달리 중남미는 세계외환시장에 넘치는 저금리의 오일달러를 도입하여 대규모 ISI 산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1979년 2차 오일쇼크와 80년대 초의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외채위기를 초래하여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90년대에 아시아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되었다.

중남미에서의 FTA의 시발점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가 90년도 초 서명하고 1994년에 발효된 NAFTA라고 할 수 있다. NAFTA는 19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천명한 범미주자유무역구상에서 비롯된 FTAA의 출발점과 같은 것이었다. 그 후 FTA는 역내국가 혹은 미국 같은 역외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확산일로에 있다. 일부 중남미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대중남미와 FTA의 강화가 2003년에 중남미 핵심국가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정체상태에 있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미국은 FTAA의 좌절 전부터 양자협정을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양자협정은 많은 나라에 있어 WTO의 차원에서 추진하던 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탄생된 글로벌화 전략의 한 부분인 것이다.

최근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생산품에 대한 역외시장의 개방에 중점을 두고, 10여 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FTA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은 FTA의 확산은 지역 내의 교역의 부진한데 비하여 역외국과의 교역은 폭발적인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CEPAL(영문 명 ECLAC)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수출은 3.5배 증가하였지만, 역내 국가에의 수출은 14%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5년의 경우 중남미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었던 칠레는 자국 수출의 89%를 미국시장으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역외국가와의 교역의 확대는 지역통합 프로젝트의 취약성과 맞물려 양자주의 협정(FTA)의 확산을 가져왔다.

중남미 학자들은 FTA가 지역통합에 역작용을 하여 통합프로젝트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미수출을 우선시하여 역내무역의 성장을 방해하며 지역통합 전략의 생산적인 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페루 FTA로 아르헨티나에서 페루로 수출하던 옥수수가 보조금이 반영된 저렴한 가격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통합)주의가 양자주의(FTA)에 비하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FTA가 재화와 서비스 등에 한정하여 다루는 반면, 지역통합에는 공동관세, 생산품목의 조정, 단일통화 및 사람의 자유이동 등의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인 빈곤퇴치, 교육 및 노동환경의 개선 등의 테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게 FTA는 시장접근을 증진시키고, 무역특혜를 강화·확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제도적 현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FTA에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의 무역전환, 행정비용(스파게티 볼 효과), 약소국의 교섭력 약화 등이다.

FTA가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현재 주요 흐름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는 지역통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에서 고려된 깊은 통합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개방된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4월 호에는 중남미지역의 “③MERCOSUR(남미 공동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오 병 열

(obyjy@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및 시행령 일부 개정 등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에도 대하여도 살펴보자.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이번 입안예고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EU FTA 협정에 따라 6천 유로 이상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특혜관세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 품목별로 이원화(확대)하여 "업체별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기업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품목별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체별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자사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며, 품목별로 인증을 받은 수출자의 경우 인증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다. 수출자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건 불비로 인한 인증 취소에 앞서 시정명령을 통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인증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는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인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계약상 대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한 특송건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회피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입대행형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 쇼핑물형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대행형업체의 요건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경우 지정요건 중 매출액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재지정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지정 심사 시에도 서류심사 및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절차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 재신청을 제한 받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판결)시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세분화한 것도 눈 여겨 볼 점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과 일반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지 않은 일반전자상거래업체 수입 물품과 개인직접수입 전자상거래물품은 정식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을 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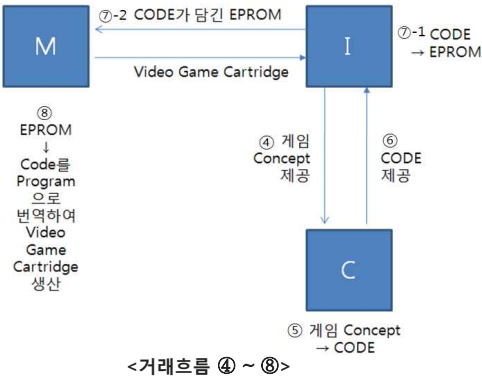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Video Game 제작을 위해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Code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HQ545279 1994.11.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Facts)

1. 당사자의 관계
 - 미국에 소재하는 수입자(①)는 가정용 오락기계에 사용되는 비디오 카트리지를 수입
 - 제조자(M)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디오 카트리지를 제조 후 수입자에게 판매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C 는 I 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업체
2. 거래흐름
 - ① 비디오 카트리지는 인쇄회로 기판에 납땜되어 있는 집적회로와 ROM(Read only memory)으로 구성됨
 - ② 게임에 사용되는 컨셉트는 영화, 만화 또는 TV 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수입자가 개발함
 - ③ 게임용 컨셉트는 code 로 변환되어 비디오 카트리지에 탑재됨
 - ④ I 는 게임용 컨셉트를 code 로 변환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C)와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용 컨셉트를 C 에게 제공
 - ⑤ C 는 컨셉트를 code 로 변환
 - ⑥ C 는 컨셉트 code 를 Floppy disk 의 형태 또는 전자전송방식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
 - ⑦ I 는 C 로부터 전달받은 code 를 EPROM(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소거 프로그램 가능 ROM)에 옮겨 담아 M 에게 무상으로 송부함
 - ⑧ M 은 EPROM 에 담긴 code 로 photomask 를 만들어 프로그래밍 패턴을 제작하고, 이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에 옮겨 비디오 카트리지를 구성하는 ROM 을 생산함
 - ⑨ 일반적으로는 I 가 C 에게 Character 를 제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C 가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I 가 획득하기 위해서 Video Game 의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C 에게 지급하여야 함
 - ⑩ I 는 C 로부터 Code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Coding Service 를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는 선불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Video Game 의 판매분에 대하여 분할로 지급함

□ 쟁점(Issue)

1. 생산자에게 생산지원이 있었는지의 여부
2. 생산지원비용의 금액 결정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 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
 - (1)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의 규정에 의거한 거래가격방법
 - (2)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 (3)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
 - 나. 생산지원(Assist)
 - (1)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적절히 분배된 금액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임
 - (2) 생산지원이란, 다음의 것 중 하나를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함
 -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
 -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또는 장비 등
 -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development), 공예, 도안, 설계, 디자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것
2. 쟁점 1 에 대한 검토
 - 가. 문제의 핵심은 Code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development)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나. 본 사안의 경우 Code 는 M 이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 가 원하는 게임의 컨셉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Code 가 없이는 게임이 탄생할 수 없음
 - 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Coding Service 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required)"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라. 관련예규 인용

관세청에서는 지난 1981 년도에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제조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상세한 제품명세서도 관세목적상 생산지원에 해당됨을 결정한 바 있음 (HRL542498, 1981)

3. 쟁점 2 에 대한 검토
 - 가. I 와 C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I 는 Coding Service 이용료와 Code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로열티로 C 에게 지급함
 - 나. I 가 C 로부터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함
 - 다. 관련 예규 인용
 - (1) HRL542152, 1980

생산지원비용은 선급금과 로열티지급금액을 포함한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의 취득비용임
 - (2) HRL544459, 1991

(가) 수입자는 향후 생산될 예정인 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위해 해외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 3 의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매 (나) 디자인 등은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다) 수입자는 디자인 등을 얻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함 (라) 관세청은 수입자가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함
 - 라. 본 사안의 경우, I 가 Coding Service 를 이용하고, Code 를 사용하고,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C 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든 또는 로열티로 지급한 것이든 생산지원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마. 관세법 시행령 152.103(e)에 따라서 생산지원비용은 적절히 배분될 수 있음

□ 결정(Holding)

- 쟁점 1.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은 있음
- 쟁점 2. 생산지원비용은 I 가 생산지원용역을 취득하는 비용 즉, 선급금 및 로열티지급 금액임

신한관세법인
관 세 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어른으로 산다는 것 _ 신한관세법인 창립 45주년



장승희 대표 관세사

며칠 전 법정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년 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가졌던 "우리 사회의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륜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행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질 때에 어른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일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갈 때에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새로운 어른들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신한관세법인이 3월 22일로 창립 45주년이 됩니다. 1965년에 서울통관사로 시작하여 많은 고객사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여왔고,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하였으며 많은 세관담당자들과 협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늘 앞장서서 견인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100년, 200년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표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깨닫게 된 겨울이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티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생기고 나라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평해진 세계에서 이러한 모든 사건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빈번히 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국경에서는 출입시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의 Cover Story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인 ATA Carnet에 대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열교수님의 중남미 특집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조금씩 음미하시며 읽어보시기 바라고, FTA와 관련하여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눈 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3월! 45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늘 새롭게 나아가는 어른 관세법인이 되어 고객 여러분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A.T.A Carnet



윤순형 관세사 (shyo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FTA News- 원산지시스템 관리의 필요성



최대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지역경제통합 현황



오병열 교수님 (obvjy@customs.go.kr)

PROFILE

- 現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 前 인천공항세관
- 도미니카공화국 컨설팅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FTA 특례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등



서유진 관세사 (yj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AEO T/F Team
- 인천경기지사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US Rulings 연재 Video Game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Code 가 생산자원에 해당 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2팀 팀장
- AEO T/F Team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